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장선임 등 지배구조 분석과 개선방안*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이사 구성을 취합·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KEYWORDS 지역방송 사장, 지배구조, 내부 식민지,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사장 사외이사추천위원회

* 이 논문은 지역방송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2015.10.27) 발표원고를 보완한 것으로 2015년 GNU 학술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 jaekim@cnu.ac.kr, 주저자

*** girirang@cnu.ac.kr, 교신저자

1. 문제의 설정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은 매우 까다로운 사장선임 제도를 갖추고 있다. 영국의 경우, BBC 사장에 해당하는 경영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의장을 임명하는 BBC 이사회인 트러스트(Trust) 위원 선정과정이 엄격하다. 공직관리청(Office of Commissioners for Public Appointments) 규정절차를 밟고 면접도 거친다. 놀란 원칙(Nolan Principles)에 따라 사리사욕 금지(selflessness), 신실함(integrity), 객관성(objectivity), 책무성(accountability), 개방성(openness), 정직성(honesty), 통솔력(leadership)을 지녀야 한다. 트러스트 위원 10명 중 4명은 반드시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즉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대표해야 한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 사장에 해당하는 이사회 회장을 선임하는 경영위원회 위원 12명도 분야와 지역별로 안배해 선출한다. 일본 8개 지역에서 각 1명, 전국 단위에서 4명을 뽑는다. 사장은 경영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다수제로 선출한다. 독일 공영방송 사장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 단위의 방송위원회 위원 역시 사회의 제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단체와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모든 방송사에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적어도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략경영론 분야의 자원기준 관점(resource-based view)을 거시적으로 적용한 사회적 자산(social asset)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해 영국, 일본, 독일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분석한 장병희·이양환(2010)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은 중앙정부와 거리를 두고 자율적 운영방식을 강조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발달한 반면 일본은 정치적 영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까지 닿은 탓에 공익과 기본권 같은 거시적 목표보다 규칙 제정과 정비 등 제도적 엄밀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맥락과 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영방송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세 나라가 엄격한 사장선임 제도를 둔 이유는 공영방송에 부여된 무거운 책무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사장이 방송사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편성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심지어 독일 공영방송 사장의 정식 직함은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기관의 감독직을 가리키는 ‘인텐단트(Intendant)’로 특별한 사회적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영방송 사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세간에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특성상 사장이, 사장선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수장인 이사장보다 ‘힘센’ 자리라고 여길 정도다. 그 탓에 사장선임 시기마다 ‘낙하산’ 또는 ‘부적격자’ 논란이 비일비재하게 일었고 그 여파가 장기간의 파업과 방송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¹⁾ 이를 소재로 한 논문과 보고서, 논평 등도 꾸준히 나왔다.²⁾ 끊이지 않는 논란과 슬한 제안에도 공영방

송 사장선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에서 공영방송 사장선임 못지않은 논란을 야기함에도 사회적 공론은 물론 학술적 분석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된 사안이 지역방송 사장선임이다. 지역적 대표성을 중시하는 외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지방자치제 부활에 발맞춰 등장한 지역 민영방송조차 그러하다. 그럼에도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 문제가 유독 공영방송 일반에 경도된 이유는 지역방송이 우리나라 방송체계의 ‘내부 식민지’로 전락한(문종대·이강형, 2005; 장호순, 2015) 현실과 무관치 않다. 갈수록 지역방송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그 실상에 관해서조차 무관심한 기류가 조성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방송 사장선임 관행에 대한 체념적 또는 방관적 태도가 짙은 것이다. 그 사이 지역방송은, 우등재는커녕 지역사회에서 적정 소비가 필요한 가치재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열등재만 양산하는 현실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류’ 같은 신세로 전락한 지역방송이 지역공동체의 약화 또는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물론 사장선임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지역방송의 침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지역이 처한 시장 환경의 열악함에 있다(권장원, 2010). 그럼에도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를 상징하고 가속화하는 데 사장선임 관행을 비롯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뒤집어 말해, 지역방송의 최고책임자인 사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 상황을 탈피하는 신히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민방이 개국한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이사 구성을 취합·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논의할 것이다. 방송사의 지배구조

1) KBS와 MBC 두 공영방송사 역대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미디어오늘>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20편의 연재물 중 15편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외압에 휘청’ 청와대 주구 자처했던 공영방송 사장 잔혹사”(2015. 4. 24)에 잘 정리되어 있다. URL: <http://special.mediatoday.co.kr/journalism/?p=391>

2) 대체로 지배구조 또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개선안을 모색한 연구(강상현, 2013; 고민수, 2006; 공공미디어연구소, 2010; 김재영, 2011; 이창근, 2009; 이춘구, 2014; 정윤식, 2013; 최영목·박승대, 2009; 최우정, 2012; 허인·이제영, 2003; 허정현, 2013)가 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사장선임을 둘러싼 갈등과 여파에 주목하거나(이진로, 2004, 2008a; 최선옥·유홍식, 2010; 최영재, 2014)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고(강형철, 2006, 2012; 최영목, 2003) 외국 사례를 분석해 대안을 찾는(김경환, 2014; 김동준, 2015; 성육제, 2009; 장병희·이양환, 2010; 장일, 2004; 정군기, 2006) 경향성을 보였다.

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소유관계 등과 방송사 내부의 인적·조직적 구성·운영을 함께 살펴봐야(최우정, 2012, 17쪽)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가 작동하는 방식을 밝히고, 나아가 사장선임 제도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법·제도와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을 규율하는 지배구조의 개선은 법·제도적 개정과 함께 방송사의 자율적 행위규범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방송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규정돼 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지역방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송국은 270개에 달했다. 개수는 많아 보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교 등 특수방송이자 주파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라디오가 대부분이다. 지역방송의 실질적 몸통은 KBS의 18개 지역방송국, MBC의 17개 지역계열사, 지역민방 10개사라 할 수 있다(김재영·한상현, 2015, 88쪽). 이 연구에서는 지역MBC와 지역민방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에 위치한 본사가 지역국의 예산·경영·인사·제작 등 제반 운영을 관리하는 직할체제의 KBS와 지역민방 중 유일하게 타 방송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독립체제로 운영하는 OBS경인TV는 제외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지역민방은 9개사이며, 여기에 17개 지역MBC를 더해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선임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이론적 배경

1) 내부 식민지론과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론(internal colonialism)은, 국가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지칭하는 종속이론(dependent theory)이나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와 달리 한 국가 내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 격차를 설명하는 틀이다. “식민지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극심한 지역 간 불평등의 형식으로 존재”(강준만, 2015, 117~118쪽)함에 주목한다. 내부 식민지란 용어의 기원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논한 레닌(Vladimir Lenin)과 이탈리아의 남북문제를 다룬 그람시(Antonio Gramsci)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학자는 헤치터(Hechter, 1975)다. 그는 내부 식민지론을 근대화론자들이 신봉한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이나 불균등발전론(uneven development theory)의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발전은 한 분야의 성장이 선행된 연후에 그 과실이 다른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진행되기에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을 집중 육성해

여타 분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가설이 현실세계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산업이나 지역 간 불균등만 확대·심화하기에 주변부에 대한 자원배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내부 식민지론은 황태연(1997) 이후 간헐적으로 주목받았다.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열등한 존재로서의 ‘지방’이 생산되는 물질적·정신적 조건을 밝히는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임의영(2006)은 중심부와 주변부 간에 구조화된 ‘지방생산모형’을 도출해 우리 사회에서 지역이 처한 위기를 읽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광석(2014)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갈등관리가 아닌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그 거지에 내부 식민지화를 거치며 내면화된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학에서 내부 식민지론을 분석틀로 차용한 대표적 연구는 문종대·이강형(2005)과 장호순(2015)이다. 이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그에 준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로는 권장원(2010)과 한선·이오현(2012)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지역방송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지역방송은 오래전부터 편성, 광고매출 배분, 인사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키국(key station) 구실을 하는 중앙사에 의해 차별과 배제, 그리고 종속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불합리한 광고매출 배분을 들 수 있다. 2013년 말 기준 TV수상기의 82%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4, 112쪽) 데 비해 중앙과 지역의 광고매출 배분은 <표 1>과 같이 MBC 67:33, 지역민방 76:24가량의 역격차를 보였다. 2013년 이후 그 격차는 더 커지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표 1. 중앙 지상파와 지역방송의 광고매출 점유율

(단위: 억 원)

| 년도 | 총매출 | MBC | | 지역MBC | | 총매출 | SBS | | 지역민방 | |
|------|-------|-------|-------|-------|-------|-------|-------|-------|-------|-------|
| | | 매출 | 점유 | 매출 | 점유 | | 매출 | 점유 | 매출 | 점유 |
| 2008 | 9,001 | 5,680 | 63.8% | 3,321 | 36.2% | 6,414 | 4,718 | 73.6% | 1,695 | 26.4% |
| 2009 | 7,180 | 4,496 | 62.6% | 2,648 | 37.4% | 5,526 | 4,064 | 73.5% | 1,462 | 26.5% |
| 2010 | 8,259 | 5,249 | 63.6% | 3,010 | 36.4% | 6,502 | 4,966 | 76.4% | 1,535 | 23.6% |
| 2011 | 9,173 | 5,971 | 65.1% | 3,202 | 34.9% | 6,858 | 5,180 | 75.5% | 1,679 | 24.5% |
| 2012 | 7,632 | 4,933 | 64.6% | 2,699 | 35.4% | 6,469 | 4,899 | 75.7% | 1,567 | 24.3% |
| 2013 | 7,191 | 4,790 | 66.6% | 2,401 | 33.4% | 6,157 | 4,652 | 75.6% | 1,504 | 24.4% |
| 2014 | 6,648 | 4,460 | 67.1% | 2,188 | 32.9% | 5,683 | 4,322 | 76.1% | 1,360 | 23.9% |

*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발전특별위원회(2015).

중심과 변방 간 격차에 주목하는 내부 식민지론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변부의 성장이 중앙의 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경제적 종속 또는 착취에 기반을 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격차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란 점이다. 경제적 착취는 대체로 정치·문화적 종속과 국가엘리트의 독점 등과 상호 중첩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계급 문제가 결부돼 수도권과 지역의 상층이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지역 상층이 적극 저항하지 않는 ‘암묵적 승인’(강준만, 2015, 122쪽)이 내부 식민지화 고착화의 일상적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의 내부 식민지화가 중앙에 의해 가동되는 단계를 넘어 지역민에 내면화되고, 지역에 의해 관철됨을 시사한다. 한선·이오현(2012; 2013)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종대·이강형(2005)과 장호순(2015)이 지역방송을 둘러싼 산업·시장구조, 방송사 소유·경영 등 지배구조, 인적·노동구조, 정책구조를 분석한 목적은 지역방송이 처한 내부 식민지화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그 구성요건으로 장호순은 특히 지역방송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꼽았다. 지역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와 방송사 경영진·이사회에 참여하는 지역인사의 비율이 그 지표일 수 있다. 이는 주요한 정치적 행위와 결정이 중앙에 의해 실행되며 지역은 중앙의 주도권을 인정한 채 따라가는 정치적 종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권의 격차’는 내부 식민지화의 핵심 기제일 수 있다(임의영, 2006). 상대적으로 문종대·이강형은 지역방송 소유·경영의 종속성에 주목했다. 중앙과 지역방송의 수직적 네트워크나 종속적 체제가, 지역문화나 여론을 중앙 권력이 좌우하게끔 하고 지역민을 중앙의 시각에서 재구성된 뉴스를 소비하는 객체로 전락시킨다는 판단이다. 중앙방송사에 의해 주도되는 사장 임명과 이사회 구성, 감사권 행사는 그 핵심기제로 작용했다.

지역MBC는 인사와 경영, 편성이 본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계열사 체제이며, 지역민방은 SBS와 가맹사 체제를 맺고 있으나 각기 인사와 경영이 독립된 별개 회사다. 따라서 사장선임 방식부터 지배구조, 그리고 이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결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부분이 많다. “MBC의 경우 본사로부터의 사장진 영입에 따른 문제로, 지역민방의 경우 대주주의 지원과 통제의 문제로”(권장원, 2010, 42쪽) 대별할 수 있다.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내부 식민지화의 실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MBC는 자사 출신이 사장으로 승진하기보다 본사 출신이 낙하산처럼 사장에 임명되는 관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린 데 비해 지역민방은 사장과 이사 선임과정에서 키국의 인적 통제가 없으나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고을배당과 같은 대주주의 경영과실 편취가 심하다고 비판받았다. 특수한 공적 책무

를 부여받은 지역민방의 이익금 배당률이 일반 주식회사를 초과하는 경우도 여럿 나타났다(최우정, 2014). 이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자원이 빈약해지고 양질의 프로그램 생산을 저해했다. 악순환이 고질화되면서 지역민방이 키국의 편성전략에 종속되었다. 즉, 지역민방의 내부 식민지화는 '대주주 고율배당-제작비 위축-프로그램 경쟁력 약화-중앙에 의한 편성종속'이라는, 지역MBC와 다른 경로의 복합적 요인이 개입한다. SBS와 가맹사 체제를 이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방은 해당 지역보다 중앙의 인사를 경영자로 선임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장호순, 2015, 394~395쪽). 이러한 관행은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궁지와 자부심을 훼손하고(문종대·이강형, 2005; 이진로, 2008) 체념문화와 위계적 관료문화를 조장함으로써 양질의 지역프로그램 기획·생산을 제약해(한선·이오현, 2013) 중앙이 지역방송을 내부 식민지처럼 지배하는 종속적 구조를 강화하는(장호순, 2015)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앙에 의한 사장선임과 계열사 지침 등으로 지역방송의 자율성이 고갈되었다는 진단(방송위원회, 1994; 정용하, 1995)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방송 시장은 키국의 소비시장으로 재편되었고, 지역방송의 소유·경영은 중앙의 독점지대를 실현하고 그 대가로 이윤의 일부를 할당받는 형국이다.

방송산업 외에 '방송권력' 차원에서도 지역은 배제되고 공영이건 민영이건 지역방송은 구조적으로 서울 방송사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방송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지역은 배제된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지역방송 활성화는 요원하다. 2014년 6월 3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상이 강화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방송권력의 근본적 불균형 해소는 도외시하고 일회성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내부 식민지 구조가 해소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김재영·한상현, 2015; 장호순, 2015, 401~402쪽).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 현실을 두고만 볼 것인가? 방송법이 방송의 공적 가치와 책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역방송이 여전히 희소성을 갖는 전파공공재를 배타적으로 독점·전유하면서 광고수익을 법에 의해 보장받는 한, 중앙의 이익을 관철시키며 지역의 중앙 종속성을 강화하는 지역방송 지배구조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은 유효하다.

2) 지역방송 지배구조 규제의 원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규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요구되지 않으나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거제시가 필요하다. 이 자체가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 현실을 방증한다. 사실 지배구조 규제 측면에서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은, 그것이 공영이건 민영이건 유사한 맥

락에 있다.

첫째,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은 공적 제도와 지원체계의 일부로 작동한다. 방송법(제5조·제6조)은 공영방송이건 지역방송이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방송사가 민영이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공영방송 체제를 고안한 이유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케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효율성을 고려해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하지 않고 지역방송 체제를 선택한 이유도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인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³⁾ 이 점에서 수신료가 투입되지 않으나 공영방송인 지역MBC는 물론 민영방송도 일정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지역민방 체제를 고안한 맥락 자체가 지방자치제 부활에 맞춰 중앙집권화에서 지역분산화로, 독점에서 분산으로, 편재화에서 균등화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의 국가적 의제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지역민방이 상법에 입각한 주식회사로서 운영도 사적재원으로 이뤄지기는 하나 그 수입이 법적으로 보장된 독점적·배타적 권역 안에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 발생하며, 주 수입원인 광고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렐법)에서 정한 결합판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도 지역민방은 공적 지원체계에 기반하고 있다(김재영, 2013).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설립되어 지역방송 지원·육성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둘째, 공영방송 사장선임에 요구되는 강한 공적 책무가 지역방송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공적 재원의 부담자 다수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방송을 시청하는 지역민의 규모는 이에 미치지 않으나 전 국민의 절대 다수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중앙의 인구밀도가 높아도 지역민의 총합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2013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TV수상기 수는 총 22,493,331대였는데 이 중 82%에 달하는 18,363,134대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었다. 같은 시점의 유료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일반위성·IPTV) 가입자 규모도 전체(27,762,285)의 83%(22,951,214)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3) 지역성은 헌법과 방송법에 투영된 가치다. 지역민에게 지역 고유의 뉴스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책무에 속한다. 우리 헌법은 선언적인 기본권 이념이든 구체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든 ‘행복추구권’을 뼈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차별 없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지역민이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 젖은 정보와 의견에 물들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점에 선 뉴스정보를 공급받고 여론형성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갖게끔 물질 기반을 구비하는 것은 헌법상 요구인 행복추구권의 요체가 된다(이승선, 2010, 205~207쪽). 방송법에서 지역성을 공익성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것도 헌법정신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김재영·한상현, 2015, 69쪽).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4, 112쪽; 218쪽). 이는 지역방송의 시청자 규모가 보편적서비스 대상에 버금가는 수준임을 뜻한다.

셋째,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은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공적 개입에 의한 강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특성을 공유한다. 두 유형의 방송은 공익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설립된 만큼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논리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실패와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의 성격이 짙다. 두 방송의 존재이유가 시장 경쟁력 향상에 있지 않기에 이들은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정책 일반을 통해 소기의 공적 가치를 달성하게끔 하는 대상이 된다.

지역방송에 초점을 맞춰 그 지배구조 규제의 법적 근거를 찾는 일도 어렵지 않다. 이는 헌법부터 시작해 방송법과 방송관련법 규정에 두루 포진해 있다.

첫째, 헌법적 요청이다. 공영은 물론 민영이더라도 지역방송의 존재이유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알권리 실현에 있다. 방송사업자의 허가제에 대한 합헌성 심사에서 헌법 재판소는, 방송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의 자유와 권리뿐 아니라 수신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송의 공적 기능 때문이다. 현재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방송의 자유가 주관적 자유권으로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판시했다. 방송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⁴⁾ 미디어랩 제도에 대한 일련의 합헌성 심사에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의 확보 장치로 방송광고 거래의 규제를 정당화한 현재 결정도 같은 맥락에 있다.⁵⁾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허가와 재허가심사를 통해 지역방송사를 존치시키는 궁극적 이유는 지역민의 정보획득,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의견교환, 알권리 행사를 통한 지역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지역방송이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의 요청이다.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

4) 현재 2001. 5. 31. 2000헌바43 등.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가가 방송매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비록 매체 유한성이 극복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수에 의해 매체가 독점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소수의 매체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활성화해야 한다. 즉, 방송 규제를 통해 정보와 견해의 다양성,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매체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경제 정책적 목적, 자국 문화의 보호와 같은 사회·문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매체의 소유 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5) 현재 2008. 11. 27. 2006헌마352; 현재 2013. 9. 26. 2012헌마271.

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누구든 법률적 근거 없이 방송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예외를 두면서도 동법 제8조(소유제한 등)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 상한이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시청자의 의견’은 방송사의 허가심사(제10조),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는 동법 제17조(재허가 등)에 따라 재허가심사에 반영된다. 방송법은 지역방송에 대한 개별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제5조). ‘지역’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해야 한다(제6조, 제33조). 방송사업자의 허가심사 시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뤄야 하며(제10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는 재허가심사에 반영된다(제17조).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사업자 평가에서 ‘지역방송사 자체 제작 비율’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점을 배점한다. 이러한 방송법 규정은 지역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공정성·다양성·균형성·지역성 등의 가치실현을 위한 기제다. 희소한 자원으로서는 전파의 공공재적 특성과 여전히 막대한 방송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등을 감안한 방송규제 원리가 지역방송에도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셋째,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과 재원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련법에 근거를 둔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했다(제7조, 제9조). 물론 지역방송에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제5조). 그 이행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지역문화 전승과 창달의 바탕이라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적 책임이 저조하거나 이윤 배당 등 특별히 시정할 사항에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 지역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제한받는다.⁶⁾ 또한 지역방송은 미디어법에서 정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받는다(제20조). 지역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제22조).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광고 매출배분을 조정하며(제21조), 미디어법은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역방송 등도 미디어법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정

6) 방통위의 지역성 지수 평가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에도 기금지원이 제한된다.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제한 기준 제2조(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2호)에 의한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 및 편성’과 ‘방송운영’ 영역 각 500점으로 구성된다. 후자에 속하는 ‘경영의 적정성’은 240점을 배점하며 세부항목은 ‘영업이익 대비 배당 비율’(120점),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80점), ‘제작인력’(40점)이다.

당한 사유 없이 미디어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15조).

헌법과 방송법은 물론이고 지역방송 관련 두 법률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미디어랩법도 지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강력한 규제 근거가 된다. 지역방송에 투입되는 기금이나 결합판매 보장은 지역방송사의 영업이익 제고나 종사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의 공적 가치 증진을 통해 지역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질서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방송이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때, 더욱이 지역방송의 지배주주나 경영진 등의 사적 이익 증진이나 서울 소재 키국의 경영 타개 혹은 인사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동원될 때 지역방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

3.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 메커니즘 분석

1) 지역MBC

헌법재판소는 MBC 방송광고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위탁을 규정한 미디어랩법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주주권 행사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공익적 관점을 떠나 상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⁷⁾ 또 MBC와 지역MBC의 소유제한 조항의 예외를 규정한 방송법 제8조 제8항의 위헌소원 사건에서 현재는, 지역MBC는 서울 MBC와 동일한 편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방송으로 인식되기에 경영주체에 대한 제한과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⁸⁾

주주권 행사의 공적 책무성과 지역MBC 경영주체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은 지역 MBC 사장선임 절차에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지역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추천과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나 모든 지역MBC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서울 MBC의 사장이 결정한다(〈부록 I〉 참고). 1990년대 중반 이후 MBC 지역계열사에 선임된 사장은 〈표 2〉와 같이 총 17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MBC 출신은 93%에 달하는 163명으로 나타났다. 175번의 사장선임 중 7%에 해당하는 12번만 자사 출신으로 이뤄진 것이다. 강원, 충청, 제주 권역에서는 100% 서울MBC 출신 사장으로 채워졌다. 영남과 호남에 서만 자사 출신이 사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영남의 경우 대구MBC 3번, 부산MBC 6번, MBC

7) 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8) 헌재 2015. 4. 30. 2012헌바358.

표 2. 권역별 지역MBC 사장의 출신사(1990년대 중반~2015년 9월)

(단위: 명)

| 권역별 방송사 | | 출신사 | |
|---------|-------------|--------|-----------|
| | | 자사 | 본사(서울MBC) |
| 강원 | 강원영동(강릉/삼척) | 0 | 17(8/9) |
| | 춘천 | 0 | 10 |
| | 원주 | 0 | 9 |
| | 소계 | 0 | 36 |
| 충청 | 대전 | 0 | 10 |
| | 청주 | 0 | 9 |
| | 충주 | 0 | 10 |
| | 소계 | 0 | 29 |
| 영남 | 대구 | 3 | 8 |
| | 안동 | 0 | 9 |
| | 포항 | 0 | 10 |
| | 부산 | 6 | 1 |
| | 울산 | 0 | 10 |
| | 경남(마산/진주) | 1 | 18(8/10) |
| | 소계 | 10 | 56 |
| 호남 | 광주 | 1 | 8 |
| | 목포 | 0 | 10 |
| | 여수 | 0 | 7 |
| | 전주 | 1 | 8 |
| | 소계 | 2 | 33 |
| 제주 | 제주 | 0 | 9 |
| 합계 | | 12(7%) | 163(93%) |

경남(마산) 1번으로 총 10번, 호남에서는 광주MBC와 전주MBC에서 각 한차례씩 있었다.⁹⁾

눈에 띄는 점은 부산MBC의 경우 대대로 자사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되다가 2014년에 처음 서울MBC 출신이 선임된 사실이다. 이는 MBC의 모태가, 1959년 4월14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으로 출범한 부산문화방송이라는 역사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9)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I〉 참고.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개국 이래 본사에서 부산MBC에 사장을 보낸 사례가 없었기에 2014년 3월 사장선임 당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가만히 앉아 서울MBC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며 신입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¹⁰⁾ 2008년부터 두 차례 연속 자사 출신 사장이 임명된 대구MBC도 2012년 4월 서울MBC 출신 인사가 선임되자 신입사장 출근저지와 이에 따른 방송파행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대구뿐 아니라 경남, 원주, 전주, 제주 4개 지역MBC 노조도 각 사에 선임된 서울MBC 출신 사장에 대해 중앙과 지역의 동반상생과 지역계열사 자율경영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며 신입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일반적으로 계열사 체제의 최대 장점은,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 계열사의 판단과 경영 상태에 따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이 꼽힌다. 이에 따라 제작여건 개선과 프로그램 품질 향상 측면에서 유연성이 크고, 전국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로 지역적 특성이 있는 소재 개발이 용이해진다. 반면 지역 실정을 고려치 않은 본사의 일방적 통제로 지역사의 자율성이 무시된 채 본사 위주의 권위적 편성과 지역문화 홀대, 이에 따른 지역종사자의 사기 저하와 위화감 조장이라는 단점이 내재되어 있다(한진만, 2011). 이 점에서 지역의 실정과 정서에 둔감하기 쉬운 본사 출신 사장의 선임 관행은 계열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용지물로 만들고 단점이 발현되기 쉬운 조건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런 관행이 정착한 이유는 지역계열사보다 서울MBC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울MBC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지역MBC 사장 자리를 활용하는 한편 지역사에 대한 통제 고리로 지역MBC 사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계열사는 사장을 필두로 한 자율·책임경영은 고사하고 서울MBC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한다.

지역MBC 이사진 역시 <표 3>과 같이 거의 모두 서울MBC 출신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부사장과 본부장 등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17개 지역계열사 전체 이사 76명 중 본사인 서울MBC 출신이 아닌 경우는 14% 수준인 11명뿐이다. 이들은 자사 출신 사장 2명(광주, 대구 각 1명), 자사 출신 상무이사 3명(강원영동, 경남, 부산 각 1명), 그리고 소주주 6명(대전, 원주 각 2명; 목포, 제주 각 1명)이다. 지역MBC의 비상임이사는 사실상 MBC 본사의 현직임원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MBC 이사진이 대부분 서울MBC 출신 사장과 서울MBC 소속 임원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는 최근의 두 조치를 거치며 더욱 이례적 형태로 진화했다. 하나는 지역MBC 대표

10) 김보성 (2014. 3. 13). “낙하산 안돼” 부산MBC 문철호 신입사장 첫 출근 무산. <민중의소리>. URL: <http://www.vop.co.kr/A00000735087.html>

표 3. 지역MBC 이사 구성 (2015년 8월 기준)

(단위: 명)

| 지역사 | 이사 인원 | 구성 | | | 비상임이사 직책 (*표시는 소주주) |
|-----|-------|---------------|---------------|--------------------|--|
| | | 대표이사 (출신사) | 상무이사 (출신사) | 비상임이사 (대주주/소주주) | |
| 강릉 | 5 | 1 (서울MBC) | 1 (자사)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삼척 | 5 | |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기획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춘천 | 4 | 1 (서울MBC)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원주 | 4 | 1 (서울MBC) | 0 | 3(1/2) |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천주교 원주교구 2명 |
| 대전 | 5 | 1 (서울MBC) | 0 | 4(2/2)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계룡건설, 오성철강 각 1명 |
| 청주 | 4 | 1 (서울MBC)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충주 | 4 |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대구 | 4 | 1 (자사)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안동 | 4 | 1 (서울MBC)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포항 | 4 | 1 (서울MBC)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
| 부산 | 5 | 1 (서울MBC) | 1 (자사)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울산 | 4 | 1 (서울MBC)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경남 | 4 | 1 (서울MBC) | 1 (자사) | 2(2/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
| 광주 | 4 | 1 (자사)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지역사 | 이사 인원 | 구성 | | | 비상임이사 직책 (*표시는 소주주) |
|-----|-------|---------------|---------------|--------------------|------------------------------------|
| | | 대표이사 (출신사) | 상무이사 (출신사) | 비상임이사 (대주주/소주주) | |
| 목포 | 4 | 1 (서울MBC) | 0 | 3(2/1)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권이담 |
| 여수 | 4 | 1 (서울MBC)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
| 전주 | 4 | 1 (서울MBC) | 0 | 3(3/0) | 본사 부사장 본사 편성제작본부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
| 제주 | 4 | 1 (서울MBC) | 0 | 3(2/1) | 본사 부사장 본사 미래전략본부장 *남창기업 1명 |

* 출처: 지역MBC 노동조합 18개 지부(2015)에서 재구성.

이사 뿐 아니라 이사회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진 이 방식은 서울 본사임원이 지역MBC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부의안건을 의결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서울MBC 출신의 지역MBC 사장선임 이외에 서울MBC 현직임원이 지역MBC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갖게 한 것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속에서 지역MBC 사장은, 설혹 지역에 헌신하려 해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기에 책임경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스스로 서울MBC 임원의 일원으로 전락해 본사와 지역사 간 이해대립 시 서울MBC 뜻대로 의사결정하기 쉽다.

또 다른 예외적 지배구조는 지역계열사에 상무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2013년 방통위가 MBC 재허가 조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MBC의 자율경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MBC가 마련한 이행방안이었다. 서울MBC는 지역사의 독립·자율경영을 위해 2017년까지 모든 지역MBC에 상무이사를 두겠다고 밝혔으며, <표 3>과 같이 17개 계열사 중 MBC경남, MBC강원영동(강릉·삼척 통합), 부산MBC 3개사에 자사 출신 인사를 선임했다. 아무리 지역사 출신을 중용한다손 치더라도 상무이사가 사장의 보좌 기능에 불과할뿐더러 사장의 권한조차 MBC 본사 현직임원으로 구성된 이사들에게 분산된 구조에서 상무이사를 통해 독립·자율경영을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전도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역MBC 실정과 동떨어진 처사이기도 하다. 지역방송 상무이사 도입은 되레 '보은인사의 성격이 짙다. 실제 2011년 3월 처음으로 상무이사를 임명한 곳이 진주MBC와 마

표 4. 지역MBC 채용과 퇴직 현황 (2015년 8월 기준)

(단위: 명)

| | 인원 | | | 정규직 채용 | | | | | 계약직 채용 (촉탁직 포함) | | | | | 퇴직자 (명예퇴직자) | | | | | 퇴직 예정 |
|----|-------|--------------------------|-----------------|------------------|------------------|------------------|------------------|------------------|--------------------|------------------|------------------|------------------|------------------|------------------|------------------|------------------|------------------|------------------|----------|
| | 계 | 정 규 직 | 계 약 직 | 2 0 1 1 | 2 0 1 2 | 2 0 1 3 | 2 0 1 4 | 2 0 1 5 | 2 0 1 1 | 2 0 1 2 | 2 0 1 3 | 2 0 1 4 | 2 0 1 5 | 2 0 1 1 | 2 0 1 2 | 2 0 1 3 | 2 0 1 4 | 2 0 1 5 | |
| 강릉 | 43 | 43 | 0 | 1 | 3 | - | - | - | 1 | - | - | - | - | - | 1 | 1 | - | 4 | |
| 삼척 | 44 | 42 | 2 | - | - | - | - | 1 | - | - | 1 | - | - | - | - | - | 1 | - | 0 |
| 춘천 | 54 | 50 ⁴ (업무직) | 1 | 1 | 1 | - | - | - | 2 | 1 | 1 | - | 2 | 2 | 2 | 4 | 4 | 9 | |
| 원주 | 37 | 37 | 0 | - | 3 | - | - | - | - | - | - | - | 1 | 1 | - | 1 (1) | 1 | 2 | |
| 대전 | 84 | 66 | 18 | 5 | - | - | - | 2 | - | 2 | 2 | - | 5 | 8 | 5 | 6 | - | 9 | |
| 청주 | 57 | 41 | 16 | 3 | - | - | 2 | - | 1 | - | - | 1 | 5 | - | 8 | 20 (10) | - | 4 | |
| 충주 | 41 | 32 | 9 | - | - | - | - | 1 | - | - | 2 | 3 | - | - | - | - | - | 2 | |
| 대구 | 114 | 105 | 9 | 1 | - | 4 | - | - | 2 | 2 | - | - | 1 | 4 | 2 | 22 (18) | 1 | 1 | |
| 안동 | 57 | 54 | 3 | 2 | 1 | - | - | - | - | - | - | - | - | - | - | 3 | - | 2 | |
| 포항 | 60 | 55 | 5 | 2 | - | 4 | - | - | 3 | 3 | 2 | 1 | 3 | 2 | - | 4 (3) | - | 2 | 5 |
| 부산 | 130 | 111 | 19 | 6 | - | 5 | - | - | - | - | - | - | 6 | 8 | 9 | 9 | 3 | 1 | |
| 울산 | 91 | 80 | 11 | 8 | 4 | - | - | - | 2 | 1 | 2 | - | 3 | 18 (16) | 2 | 2 | 3 | 1 | 13 |
| 경남 | 144 | 129 | 15 | - | - | 1 | - | - | 2 | 2 | 6 | 7 | 1 | 4 | 10 | 37 (11) | 9 (6) | 3 | 9 |
| 광주 | 86 | 78 | 8 | 1 | 3 | - | - | - | - | - | - | - | 4 | 2 | 7 | 6 | 6 | 6 | |
| 목포 | 55 | 54 | 1 | - | 1 | - | - | 1 (업무직 전환) | - | 1 | - | 1 | - | 1 | 1 | - | 1 | (6) | 6 |
| 여수 | 54 | 46 | 8 (무기 계약) | 2 | - | - | - | - | - | - | - | - | - | 1 | - | 2 (1) | - | - | |
| 전주 | 83 | 65 | 18 | 4 | 4 | - | - | 1 | 1 | 4 | 7 | 6 | 2 | 4 | 10 | 7 | 1 | 7 | |
| 제주 | 66 | 52 | 14 | 2 | - | 5 | - | - | - | 2 | 4 | - | 3 | 5 | 10 | 1 | - | 4 | |
| 합 | 1,300 | 1,140 | 160 | 38 | 16 | 24 | 2 | 2 | 12 | 13 | 23 | 27 | 14 | 54 (16) | 48 | 97 (14) | 96 (36) | 22 (6) | 84 |

* 출처: 지역MBC 노동조합 18개 지부(2015.9).

산MBC의 강제통폐합 논란 끝에 출범한 MBC경남이었다. 그 뒤를 이어 상무이사가 선임된 계열사도 한창 통폐합이 추진 중이던 강릉MBC와 삼척MBC, 그리고 2014년 3월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부산MBC였다.

본사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형성된 지역MBC 지배구조에서 선임된 사장은 장기적 비전이나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전략보다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하기 쉽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작인력 감축이며, 이는 제작환경 악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표 4>에 나타난 최근 5년간의 지역MBC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채용 자체가 저조한 가운데 최근 2년 동안은 아예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8월 기준 임원을 제외한 지역MBC 전체 인력은 1,300명이며 이 중 정규직은 1,140명(88%), 계약직은 160명(12%)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채용된 인력은 정규직 81명, 계약직 89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MBC 1개사 당 1년에 정규직과 계약직 1명씩 채용한 꼴이다. 특기할 사항은 최근 2년간 정규직 신규충원이 지역MBC 계열사 전체를 통틀어 단 3명일 정도로 저조하고, 계약직의 비중이 정규직보다 14배나 크다는 점이다. 계약직 위주의 채용은,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는 방송직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비용절감을 지상과제로 삼은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MBC에서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인원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390명(정년퇴직 317명, 명예퇴직 73명)에 달했다. 2016년 말까지 지역MBC 전체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84명의 정년퇴직자가 예정돼 있어 인력유출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6년 사이 지역MBC 전체 인력의 36.5%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임에도 신규채용 계획은 불투명하다. 정규직보다 계약직으로 인력을 충원한 최근 추세로 볼 때 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계약직 직원으로 대체될 공산이 크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2) 지역민방

9개 지역민방 출범 이후 2015년 9월까지 선임된 사장은 <표 5>와 같이 총 40명이다. 이 가운데 대주주나 그 직계비속이 사장을 맡은 경우가 3차례(광주방송 4대 대주주·2대 사장 정일윤 2001.9~2011.11; 제주방송 1대 대주주·1대 사장 오현봉 2001.12~2006.3; 울산방송 5대 대주주 김윤수 2005.3~현재; 3대 사장 김용채 2005.11~2006.12) 있었다.¹¹⁾ 대주주가 직접 경영까지 담당하는 봉건적 형태의 빈도(7.5%)는 높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지역MBC의 경우와 다르게 지역민방 사장은 자사 출신이 10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11)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Ⅱ> 참고.

표 5. 지역민방별 역대 사장의 전직 (사별 출범~2015년 9월)

(단위: 명)

| 방송사 | 전직 | | |
|------|-------------|---------|---------------------------------|
| | 대주주 | 자사 | 타사(밀출 지역 연고) |
| KNN | 0 | 4 | 2 (KBS 1, 부산MBC 1) |
| TBC | 0 | 1 | 5 (KBS 3, 대구MBC 1, 대구매일신문 1) |
| 대전방송 | 0 | 0 | 6 (SBS 4, MBC 1, 대전MBC 1) |
| 광주방송 | 1 | 0 | 3 (MBC 2, SBS 1) |
| 울산방송 | 1 (직계비속) | 2 | 2 (KBS 1, KNN 1) |
| 청주방송 | 0 | 2 | 2 (충주MBC 1, SBS 1) |
| 전주방송 | 0 | 1 | 2 (SBS 1, MBC 1) |
| 강원민방 | 0 | 0 | 3 (춘천MBC 1, 진주MBC 1, 강원대 1) |
| 제주방송 | 1 | 0 | 2 (제주KBS 2) |
| 합계 | 3(7.5%) | 10(25%) | 27(67.5%) |

차지했다. 자사 출신은 아니지만 지역에 연고를 가진 언론계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도 10차례였다. 전체 4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명이, 대주주와의 관계를 배제할 때 비교적 지역 실정에 밝은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서울본사의 장악력이 압도적인 지역MBC와 비교한 상대적 측면에서 그러할 뿐이다. 나머지 17명 가운데 16명은 중앙 지상파 출신이고, 1명은 지역방송 출신이나 지역적 연고가 없는 경우였다. 지상파 출신은 SBS 7명, KBS 5명, MBC 4명의 분포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긴 KBS와 MBC보다 SBS 출신 인사가 지역민방 사장으로 다수 중용된 사실이 특징적인데 이는 가맹사 체제에서 키국 구실을 하며 전파료 배분, 즉 방송광고 매출배분의 열쇠를 쥐고 있는 SBS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호순(2015, 394~395쪽)도 지역민방이 중앙 인사를 경영자로 선임하는 이유가 방송정책기구를 서울에서 독점하고 있고 SBS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상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민방의 예측성은 SBS와 지역민방이 맺고 있는 'SBS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와 '편성

및 네트워크 시간대에 관한 협약, '보도에 관한 협약'에서 엿볼 수 있는데 광고매출 배분의 경우 직전 5개년도 매출의 100%가 아니라 97% 보장 기준이 적용되며, 각 사에 대해서는 최소 매출 92% 보장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지역민방 입장에서는 광고매출 배분율의 주도권을 쥐고 SBS와의 호혜적 관계 형성이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¹²⁾

지역민방별로 사장선임의 경향성도 보였다. KNN은 자사 출신의 중용이 두드러졌다. 출범 10년차인 2004년부터 4회 연속 자사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권역이 같은 부산 MBC도 유사한 양상이었는데 이는 우연한 현상이라기보다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청주방송과 울산방송도 비교적 자사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달리 대전방송과 광주방송은 자사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하지 않는 성향이 강했다. 특히 대전방송은 6명의 사장 중 4명을, 그 중 3명은 2009년부터 3차례 연속 SBS 출신으로 선임했다. 광주방송은 가장 최근 선임한 사장이 SBS 출신이다. 두 방송사, 특히 대전방송의 대주주는 다른 지역민방에 비해 가맹사 체제의 핵인 SBS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유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민방 사장은 사별로 이사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대주주에 의한 1인 지배구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민영방송사라는 이유에서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 가운데 대주주가 방송을 사유화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의미다.¹³⁾ 경영부터 편성·제작에 이르기까지 대주주의 일탈적 개입이 고질화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고율배당은 그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표 6>과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지역민방 9개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비율은 평균 24.1%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9개 지역민방의 영업이익률 평균 8.2%의 3배에 이르는 비율이다.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의 6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각각 7.8%, 6.1%임에도 배당률은 무려 그 5배에 달하는 40.7%, 30.3%를 기록했다. 6년간 평균 배당률이 30%를 넘는 방송사만 해도 40%대의 전주방송을 비롯해 KNN(35.7%), TBC(30.6%), 강원민방(30.3%)

12) 지역민방 대주주가 SBS 회장의 추천을 받아 사장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세간의 의혹은 바로 여기서 비롯한다. 최근에는 SBS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 보장을 무기로 프라임타임에 SBS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는 비밀협약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장준(2015, 8, 20). SBS, 지역민방과 매출보장 조건 '편성권 침해' 비밀협약. <미디어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dxno=49938>

13)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지민노협)의 비공개자료(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지민노협 핵심 요구사항)에 따르면, 대주주가 직접 방송사에 상주하거나 대리인을 파견해 시시콜콜한 업무까지 지시하고, 대주주의 취향에 따라 지역성과 무관한 아이템이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등 대주주의 노골적 개입은 비밀비재하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사례는 지민노협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표 6. 지역민방의 배당 현황

(단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평균 |
|------|-----------------|------|------|------|------|------|------|
| |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대비) | | | | | | |
| | 영업이익률 | | | | | | |
| KNN | 35.2 | 43.0 | 35.3 | 15.3 | 27.9 | 57.7 | 35.7 |
| | 12.1 | 16.4 | 16.7 | 13.5 | 5.9 | 12.9 | 12.9 |
| TBC | 35.0 | 36.8 | 29.4 | 13.3 | 38.7 | 30.5 | 30.6 |
| | 12.8 | 14.7 | 10.7 | 7.0 | 5.8 | 5.9 | 9.4 |
| 대전방송 | 13.7 | 0.0 | 6.7 | 11.7 | 93.3 | 0.0 | 20.9 |
| | 11.0 | 13.7 | 13.0 | 4.7 | -2.8 | -4.6 | 5.8 |
| 광주방송 | 0.0 | 45.6 | 0.0 | 0.0 | 0.0 | 13.1 | 9.7 |
| | 11.5 | 12.2 | 15.1 | 2.2 | 9.5 | 3.7 | 9.0 |
| 울산방송 | 34.2 | 0.0 | 0.0 | 33.7 | 0.0 | 45.6 | 18.9 |
| | 6.8 | 4.2 | 5.1 | 6.2 | 1.6 | 2.6 | 4.4 |
| 전주방송 | 0.0 | 42.8 | 31.9 | 54.3 | 72.8 | 42.9 | 40.7 |
| | 7.3 | 7.9 | 12.4 | 9.9 | 5.8 | 3.9 | 7.8 |
| 청주방송 | 0.0 | 75.0 | 0.0 | 0.0 | 0.0 | 0.0 | 12.5 |
| | 0.6 | 10.7 | 9.9 | 0.6 | 0.5 | -0.9 | 3.5 |
| 강원민방 | 19.2 | 23.0 | 0.0 | 37.5 | 69.3 | 33.3 | 30.3 |
| | 8.0 | 12.7 | 5.4 | 4.0 | 2.0 | 4.8 | 6.1 |
| 제주방송 | 24.7 | 25.2 | 18.2 | 22.8 | 13.9 | 0.0 | 17.4 |
| | 16.9 | 18.0 | 21.8 | 20.7 | 11.9 | 0.9 | 15.0 |
| 전체 | 24.1 | | | | | | |
| | 8.2 | | | | | | |

* 출처: 금융감독원.

으로 전체 지역민방의 절반가량이었다. 6년 사이 50% 이상의 배당률을 기록한 경우도 6차례나 있었다. 대전방송이 2013년 93.3%라는 경이로운 배당률을 기록했으며 청주방송은 2010년 75%, 강원민방은 2013년 69.3%, 전주방송은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54.3%와 72.8%에 달했다. 놀라운 점은 방송사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1월 대주주에 대한 지역방송사의 배당이, 전체 산업 평균 배당률인 16%를 훨씬 웃돈다고 엄중 경고했음에도¹⁴⁾ 고율배당이 계속된 사실이다. 사기업이더라도 지상파에 속하는 지역민방은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를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이용하며, 권역 내의

표 7. 지역민방 채용과 퇴직 현황 (2015년 8월 기준)

(단위: 명)

| | 인원 | | | 정규직 채용 | | | | | 계약직 채용 (촉탁직 포함) | | | | | 퇴직자 (명예퇴직자) | | | | | 퇴직 예정 |
|----|-----|-------------|-------------|------------------|------------------|------------------|------------------|------------------|--------------------|------------------|------------------|------------------|------------------|------------------|------------------|------------------|------------------|------------------|----------|
| | 계 | 정 규 직 | 계 약 직 | 2 0 1 1 | 2 0 1 2 | 2 0 1 3 | 2 0 1 4 | 2 0 1 5 | 2 0 1 1 | 2 0 1 2 | 2 0 1 3 | 2 0 1 4 | 2 0 1 5 | 2 0 1 1 | 2 0 1 2 | 2 0 1 3 | 2 0 1 4 | 2 0 1 5 | |
| 부산 | 137 | 134 | 3 | 3 | 3 | - | - | 2 | - | 1 | - | 2 | - | - | 3 | 7 (1) | 10 | 1 | 0 |
| 광주 | 99 | 88 | 11 | 4 | 10 | 2 | 4 | 2 | 1 | 2 | 1 | 2 | 4 | 12 | 4 | 5 (1) | 5 | 3 | 0 |
| 대전 | 117 | 97 | 20 | - | 2 | 2 | - | 1 | 7 | 13 | 11 | 8 | 7 | 13 | 11 | 7 | 14 | 3 | 3 |
| 대구 | 131 | 128 | 3 | - | 2 | 4 | - | - | 1 | - | - | 3 | 1 | 3 (2) | 2 | 2 | 3 (2) | 3 (2) | 3 |
| 울산 | 82 | 80 | 2 | 2 | - | 5 | 1 | - | - | - | 1 | - | 1 | 4 (1) | 1 (1) | 2 (1) | - | 1 | 1 |
| 청주 | 69 | 63 | 6 | - | 1 | - | - | - | 3 | 3 | 1 | 2 | - | 1 | 3 (1) | 1 | 10 (2) | 8 | 2 |
| 전주 | 72 | 64 | 8 | - | - | - | - | - | - | 2 | - | - | 1 | - | - | - | 2 (1) | 2 | 1 |
| 강원 | 79 | 72 | 7 | 11 | 1 | 2 | 6 | 1 | 8 | 1 | 3 | 3 | 2 | 11 | 7 (2) | 11 (5) | 7 (1) | 5 | 0 |
| 제주 | 82 | 75 | 7 | 3 | 4 | 1 | 5 | - | - | 3 | 5 | 3 | - | 8 | 2 | 3 | 3 | 3 | 2 |
| 합계 | 868 | 801 | 67 | 23 | 23 | 16 | 16 | 6 | 20 | 25 | 22 | 23 | 16 | 52 (3) | 33 (4) | 36 (7) | 54 (7) | 29 (2) | 12 |

*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발전특별위원회(2015).

독점적 사업권까지 보장받고, 결합판매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방송활동에 따른 실적을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건 방송사유화에 가깝다.

고율배당을 통한 주주 이익의 극대화는 제작과 인력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표 7>에 나타난 최근 5년간 지역민방의 신규채용 양상은 지역MBC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이조차 감소 조짐을 보이

14) 당시 방통위는 과도한 배당이 지속될 경우 방송 관련 심사나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미선 (2011. 11. 11), 살림살이 어렵다던 지역방송 대주주엔 고배당?. <머니투데이>. URL: <http://news.joins.com/article/6645334>

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 지역민방의 전체 인력은 868명이며, 정규직(801명)이 계약직(67명)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채용된 인원은 정규직 84명, 계약직 105명으로 1개사 당 1년에 정규직과 계약직 각 1명 내외이며, 정규직보다 많은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웠다. 최근 5년간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인원이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239명에 달하나 결원마저 온전히 충원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채우는 패턴도 지역MBC 사례와 판박이다.

지역MBC뿐 아니라 지역민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채용 양상은 지역방송이 인건비 절감과 같은 내핍경영에 치중함을 시사한다. 이는 제작환경보다 수익을 우선하는 데서 비롯한다. 정규업무 시간 전의 생방송시 발생하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 아침뉴스를 녹화한 사례까지 있다. 이러한 내핍경영으로 얻은 이윤이 주주들에게 고율배당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제작·편성 측면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보다 키국 프로그램 수증계에 대한 의존을 높이게 한다. 제작인력의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은 소통부재와 경쟁부재 문화를 조장한다. 열악한 제작환경과 부실한 지원체계, 중앙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경험하며 형성된 좌절감은 체념문화를 야기한다. 당장의 필요와 경제적 효용성 위주의 인력활용은 인력양성 부재 문화를 조성한다. 이 속에서 양질의 지역프로그램 생산이 제한되는 것이다(한선·이오현, 2013).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는 바로 이러한 고리를 매개로 강화된다. 즉, 지역민방 대주주의 고율배당 경영기조는 부실한 인력관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재원 축소, 양질의 지역프로그램 부재로 이어져 결국 키국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성을 높인다. 또한 ‘전파료 협상’으로 알려진 SBS와의 방송광고 매출배분 논의에서 지역민방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¹⁵⁾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일차적 배경이 협소한 지역시장에 있기는 하나 지역MBC의 경우 서울본사의 지배구조 통제가 있듯이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있기에 작동 가능한 일이다. 지역민방 대주주의 이해관계는 직접 사장을 맡거나 대리인에 해당하는 인사를 선임해 친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철된다. 지역민방 사장은 경영일선에서 대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창구이기 쉽다. 지역민방 인사정책의 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도 경영진이 대주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흑자 중심으로 경영하면서 단기 필요에 의한 인력만 충원하기 때문이다(권장원, 2010, 42~43쪽).

15) 실제 대부분의 지역민방은 SBS와의 방송광고 매출배분 비율과 액수에 만족하지 않음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나서지 않는다. 대전방송이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통위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극히 일부 사례만 있다.

4.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1) 방송법과 관련법령 부문

지역방송 지배구조 규제의 법적 근거가 헌법을 비롯해 방송법과 관련법령에 걸쳐 있는 만큼 그 개선방안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최상위법인 헌법은 차치하고 방송법과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미디어렙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방송법 부문이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항의 '방송편성규약'에 후문의 단서조항으로 '지역방송' 편성규약을 추가해 지역방송사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실질적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¹⁶⁾ 이는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고려할 때 입법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가 규정한 방송평가 항목에 가칭 '사장 선임추천위원회', '사외이사추천제도', '고배당 여부' 등의 항목을 신설해 반영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¹⁷⁾ 현행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60점), '재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80점), '방송사 운영관련 제 규정 준수'(80점) 등으로는 지역방송 사장선임 관행 등의 요인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를 방지하기 역부족이다. 제17조(재허가 등)의 재허가심사에도 사장선임추천위원회 등의 항목이 반영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재허가심사와 관련해 방통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 '임시허가제'를 도입해 지역방송 재허가심사를 실질적인 지역성 중심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¹⁸⁾ 더 나아가 제87조(시청자위원회)와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보완해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지역방송 프로그램과 편성, 궁극적으로 지역시청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¹⁹⁾

16) 이를테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정, 공표하는 방송편성규약은 배당의 제한 등 방송의 공공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밑줄 개정안 제안)

17) 이를테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는 사장 및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추천제도, 주주에 대한 배당의 적절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밑줄 개정안 제안)

18) 이는 방송법 방송평가에 관한 제31조 제1항의 개정안 내용, 즉 지역방송사로 하여금 사장 및 이사의 선임 추천 제도를 활용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의 적절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이를 재허가에 활용하도록 규정하면 가능하다.

19) 이를테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한 제88조 제1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시청자위원회가 사장

현재 법정의무인 지역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역시청자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동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는 지역방송으로 하여금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 요청도 수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친목모임’의 외피를 벗고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에 기여하도록 지역사회 추천 시청자위원 구성 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과 결합판매 보장도 지역민의 시청자위원회 활동 강화의 배경이 된다.

둘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부문이다.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2항에 ‘지역방송 사장선임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제도’ 등의 발전적 수용을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²⁰⁾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지원에서 사장선임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방송사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동조 제6항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 요인에 지역방송 지배주주의 경영·편성 침해와 고배당 행위가 명시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²¹⁾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제한 기준에 따른 지역성 지수 평가에서 사장선임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제의 도입·시행 여부 항목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 지역방송 지원정책은 지역방송사의 경영·제작·편성 여건을 개선하고 대주주의 봉건적 경영 개입과 편성 침해 행위, 수익을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시청여건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적 이익 창구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

셋째, 미디어렐법 부문이다. 동법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는 지역방송에 대한 결합판매를 보장하면서 방통위로 하여금 해당 연도 지역방송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합판매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들(미디어미래연구소, 2014; 이재영·이주영, 2012)은 획일적인 결합판매 비율 획정보다 자체제작비 비율이나 투입 수준 등의 요인을 반영해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보장이 지

및 이사의 선임추천위원회 규정, 절차, 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3의2. 사장 및 이사 등 선임추천위원회 규정, 절차, 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의3. 주주 배당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밑줄 개정안 제안)

20) 이를테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②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지역방송의 사장선임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사항 (밑줄 개정안 제안)

21) 이를테면 지역방송의 발전기금 지원 제한 대상에 주주에 대한 고액 배당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동조에 제9항을 신설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⑩ 제6항 제1호에 의한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는 지역방송 주주의 경영·편성 침해 행위, 배당의 적절성을 포함해야 한다. (밑줄 개정안 제안)

역방송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입법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방송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의 결합판매 제도는 지역방송사의 지역프로그램 제작·편성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 결합판매 비율을 조정해 고시할 때 프로그램 자체 제작비율과 제작비 수준 이외에 지역성 확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장선임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제 도입·실행 여부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²²⁾ 더불어 동법 제23조(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지역방송의 이해를 반영하게끔 인선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현행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방송사와 종교방송이 추천하는 3명의 위원을 지역방송 5명, 종교방송 1명으로 개정하되, BBC 이사회 트러스트의 위원 자격요건을 참조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의 지역 거주와 지역에서 직업을 가질 것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이밖에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위한 규정 개정도 시급하다.²⁴⁾

넷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문이다. 동법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기본계획, KBS 이사 추천과 감사 임명,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EBS 사장·이사·감사 임명,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 지역방송 허가·재허가, 미디어렐의 허가·취소·승인,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조사·제재, 미디어렐의 금지행위 조사·제재, 방송사업자와 미디어렐 상호 분쟁조정,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방송평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등 지역민의 방송시청과 알권리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법 제5조(임명 등)의 위원 임명에서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²⁵⁾ 당장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현재 설

22) 이를테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④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의 지원규모는 자체 제작비의 규모와 비율, 「방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장 및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추천제도, 주주에 대한 배당의 적절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밑줄 개정안 제안)

23) 이에 따른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은 특별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밑줄 개정안 제안)

24) 이에 대해서는 이승선(2015a; 2015b) 참고.

25) 이에 따른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임명 등) ④ 위원 중 최소 2인은 특별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밑줄 개정안 제안) 사실 지역방송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 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방통위 위원 임명 조항 전반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인을 지

치·운영 중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지역방송이 중앙의 단순한 중계소 역할에 머무는 등 지역성이 고갈되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2) 방송사 자율규제 부문

계열사 체제의 지역MBC와 개별 회사인 지역민방의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는 상이하다. 따라서 자율적 행위규범에 대한 접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 제도와 대주주 지배 문제 관련해 두 가지 개선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방송 사장선임 절차 개선으로 가칭 ‘사장선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그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었다. 현행 지역MBC 사장 임명 역시 중앙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거나 경영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자체만으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연구(김병섭·박상희, 2010)도 있으나 대부분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경영관리 전반에 나타난다고 지적한다(고재학, 2008; 김동열·한상범, 2011; 김병규, 2013; 신장철, 2012; 이명석, 2001). 서울MBC에 근무하거나 하였다는 이유로 지역MBC 사장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사장이 되려는 자는 누구나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적정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사장선임추천위원회의 검증 절차에 참여해 그 적격성을 심사받을 필요가 있다. 지역MBC 주주와 종사자, 지역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사장선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방송법, 방송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지역방송의 공공성·다양성·지역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추천하게끔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때 그 3분의 1을 지역대표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방통위에 의한 방문진 이사선임은 여야와 정부가 각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지역MBC의 지역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방송 현장에서는 지역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방문진 이사의 3분의 1을 구성하게 되면, 지역성 대변은 물론 여야의 이익이 대립할 때 그 완충장치로도 기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지역방송협의회, 2015). 서울 이사 중심의 지역 이사회 정관 개정도 시급한 사안이다. 이사회 소집 권한을 대표이사에서 비상임이사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에 따라 사장의 권한이 약화되고 경영종속이 가속화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 사정에 어두운 서울 임원 출신 인사에 의한 정책결정의 오류

명하고 국회 추천 몫 중에서 1인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파행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비판받기 때문이다.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 이전으로 원상 복구할 필요가 있다. 옥상옥에 불과한 상임이사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지역민방의 경우, 일차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민영이더라도 공적 책무가 요구되고 비교법적으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방송기업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²⁶⁾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경영·편성 등에 대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 및 사외이사선임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지역방송협의회, 2015). 지역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와 종사자, 시청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사장과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절차는 지역MBC의 경우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한편, 지역MBC건 지역민방이건 법령개정 부문에서 제안한 대로 방송법 제4조에 따른 편성규약의 제정과 개정에서 대주주의 고배당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영의 투명성과 방송재원 운용의 공공성 확보 내용도 담아야 한다.

5. 결론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지역방송은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존립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계층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내몰려 있다. 여러 연구는 이를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라고 진단한다. 지역방송사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는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내부 식민지론을 분석의 직간접적 모티브로 삼은 연구들(강준만, 2015; 권장원, 2010; 문종대·이강형, 2005; 이광석, 2014; 임의영, 2006; 장호순, 2015; 한선·이오현, 2012)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지역방송을 비롯한 지역의 내부 식민지화 현상이 중앙에 의해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와 관련 깊다는 것이다. 지역이 중앙의 정책결정에 종속되거나 중앙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기지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지

26) 현대국가에서 기본권의 실현이 단지 입법형성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입법형성 속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역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헌법적으로 더욱 요청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독일처럼 민영방송사 소유자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처리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거나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 기업의 결합으로 인한 상호교차에 의한 민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배제하는 방식의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최우정, 2014).

역방송 사장선임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폐해를 타개하는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는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상 지역방송 편성규약의 단서조항 신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 지역방송 사장선임추천위원회·사외이사제 등의 실천적 내용 담보, 미디어법상 지역성 회복을 위한 장치를 규정·운영하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방통위법상 지역민의 방송시청과 알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의 임명 등을 제안했다.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과 대주주 지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대주주와 지역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한 사장선임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용, 방문진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방송에 밝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민방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지역방송의 공공성 실현과 사장·사외이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하건 관찰 또는 직관에 의거하건 이 논문은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를 ‘문제적 현상’이자 ‘고착된 현실’로 제시한 다음 그 실상을 뒷받침하거나 환기하는 데이터와 사례를 활용하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이 논문이 논리적이라기보다 정황적 근거에 치우치고 인과성보다 개연성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냈다면 이러한 방식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택한 이유는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방송권역과 같은 공간성의 해체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양선희, 2014, 262쪽) 사장선임을 고리로 한 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지역방송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내부 식민지화된 지역방송의 명맥만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차라리 이 비효율적 시스템을 폐기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 그것이 아니라면 땀질식 처방으로 연명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근원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유력한 출발점으로 사장선임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을 상정한 것이다.

이 논문의 중요한 한 축은 지배구조 규제 개선방안의 제시였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제는 법과 제도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다. 미비한 점은 개선해야 마땅하나 법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철용성처럼 갖춰도 틈새와 해석의 영역까지 봉쇄할 수는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격임에도 방송사 자율규제를 포함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의 ‘정신’이다.

체념과 정체에 빠진 지역방송 ‘현상’에 관한 본질적·구조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면밀하고 정교한 분석방법, 그리고 법제와 자율규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그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고안 등은 후속연구의 몫으로 돌린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의 실상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반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상현 (2013). 공·민영 체계 개편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방송문화연구>, 25권 1호, 39-74.
- 강준만 (2015).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고착시키는 일상적 기제: '대학-매체-예산'의 트라이앵글. <사회과학연구>, 54집 2호, 113-147.
- 강형철 (2006).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이렇게 하자. <신문과 방송>, 4월호, 66-72.
- 강형철 (2012). 공영 언론사 파업 사태의 원인과 해법. <관훈저널>, 123호, 174-181.
- 고민수 (2006).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방송문화연구>, 18권 1호, 153-181.
- 고재학 (2008).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한국정책연구>, 8권 2호, 103-125.
- 공공미디어연구소 (2010). <MBC 수평·상생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
- 권장원 (2010). 시장 환경에 입각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 조직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탐사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호, 27-47.
- 김경환 (2014). 각국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의 특징. <신문과 방송>, 8월호, 48-51.
- 김동열·한상범 (2011, 6월).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 제도변화와 경영실적의 상관성 분석: 정책 실패(제도변화)와 감독실패(낙하산인사)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김동준 (2015. 5. 22). 해의 주요 공영방송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 <KOBA Daily Mews>, 18면.
- 김병규 (2013). 공영언론 낙하산 인사 관행 깨뜨려야. <관훈저널>, 126호, 88-90.
- 김병삼·박상희 (2010).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권 2호, 85-109.
- 김재영 (2011, 11월). <KBS 지역방송 정책 대안 모색: 네트워크 거버넌스, 인사 재정, 제작을 중심으로>. KBS 노동조합 주최 KBS 지역방송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울: KBS 신관 국제회의실.
- 김재영 (2013, 9월). <지역민방의 공적 위상과 정체성>.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주최 지역민방의 공공성과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대전: 대전역 회의실.
- 김재영·한상현 (2015).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향한 기대와 현실. <언론과학연구>, 15권 3호, 67-96.
- 문중대·이강형 (2005). 내부 식민지로서의 지역방송 재생산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175-208.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4). <지역·중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30).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4). <201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성육제 (2009). 프랑스 공영방송법 제정: 배경, 과정, 의미. <방송통신연구>, 68호, 163-192.
- 신장철 (2012, 4월). <일본의 대장성 개혁배경에 관한 연구: 낙하산 인사 관행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양선희 (2014). 수용자 조사를 통해 본 지역언론의 현황과 과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권 1호, 261-280.

- 이광석 (2014).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48권 3호, 147-174.
- 이명석 (2001).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실적. <한국행정학보>, 35권 4호, 139-156.
- 이승선 (2010). 미디어법 개정과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사회과학연구>, 21권 2호, 201-224.
- 이승선 (2015a).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실효성을 위한 법령의 개선방향. <방송통신연구>, 92호, 44-74.
- 이승선 (2015b).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운영에 관한 평가: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106호, 111-148.
- 이용재 (2010). 지역방송의 재정적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논의. <언론학연구>, 14권 1호, 125-127.
- 이재영·이주영 (2012). <방송광고판매 경쟁도입에 따른 중소방송광고 결합판매 할당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이진로 (2004). 한국 공영방송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 초기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선임 과정 분석. <언론과학연구>, 4권 2호, 177-208.
- 이진로 (2008a, 10월).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경제학: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KBS 사장 선임 방식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 이진로 (2008b). 지역방송 정책의 평가와 과제.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68-113.
- 이창근 (2009). 주권재민 원칙을 구현하는 공영방송사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탐색. <미디어 경제와 문화>, 7권 1호, 149-200.
- 이춘구 (2014).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법적 연구. <언론과 법>, 13권 2호, 217-265.
- 임의영 (2006).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타자화논리와 내부식민지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권 4호, 131-153.
- 장병화·이양환 (2010). 자원기준관점(Resource-based View)을 적용한 영국, 독일, 일본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분석. <언론과학연구>, 10권 2호, 502-543.
- 장일 (2004). BBC 사장 선임 기준과 절차. <신문과 방송>, 4월호, 86-90.
- 장호순 (2015). '종속'과 '배제': 한국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5권 2호, 375-411.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발전특별위원회 (2015). <2015 국정감사 자료>.
- 정근기 (2006). BBC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권 1호, 404-444.
- 정용하 (1995). 지역방송의 자율실태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1권 1호, 37-82.
- 정윤식 (2013). ICT 거버넌스 구조개편과 새 정부 방송 정책. <방송문화연구>, 25권 1호, 7-38.
- 조항제 (2006). 지역방송의 지역성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4호, 275-305.
- 지역방송협의회 (2015). <2015 국정감사 자료>.
- 지역MBC 노동조합 18개 지부 (2015). <지역MBC 현안 문제> (방송문화진흥회 제출 자료).
- 최선욱·유홍식 (2010).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뉴스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분석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호, 69-89.

- 최영목 (2003, 5월). <한국방송 사장과 한국방송 개혁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 최영목·박승대 (2009).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6호, 590-626.
- 최영재 (2014). 공영방송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민주화의 역설, 정치적 종속의 결과.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4호, 476-510.
- 최우정 (2012).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언론과 법>, 11권 1호, 1-32.
- 최우정 (2014). 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공적책무 달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45집, 183-214.
- 한산·이오현 (2012). 지역방송의 지역성 개념과 지역성 구현의 문제: 광주지역 방송생산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6권 5호, 271-306.
- 한산·이오현 (2013). 지역방송 프로그램 생산의 제한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광주지역 생산(자)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4호, 243-268.
- 한진만 (2011). <한국방송의 이해>. 서울: 한울.
- 허인·이제영 (2003).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언론과 법>, 2호, 443-503.
- 허정현 (2013). 공영방송 지배구조 조속히 개선해야. <관훈저널>, 126호, 79-81.
- 황태연 (1997). 내부식민지와 저항적 지역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7호, 11-36.

Hechter, M. (1975). *Internal colonialism*.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투고일자: 2016. 3. 31. 게재확정일자: 2016. 7. 18. 최종수정일자: 2016. 7. 23.

부록 |

권역별 지역MBC 주주 구성과 역대 사장 (1990년대 중반~2015년 9월)

<강원>

| | 서울MBC 보유주식 | 기타 |
|-----------------|--------------|--------------|
| MBC강원영동(강릉, 삼척) | 2015년 통합사 출범 | |
| 춘천MBC | 100% | |
| 원주MBC | 60% | 천주교 원주교구 40% |

강릉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김정환 | 1996.3~1998.2 | 서울MBC | PD | 라디오 제작국장 |
| 이의열 | 1998.3~2001.2 | 서울MBC | 경영 | 재무국장 |
| 김동진 | 2001.3~2004.2 | 서울MBC | 기자 | 삼척MBC 사장 |
| 김영일 | 2004.3~2005.7 | 서울MBC | 기자 | 보도제작국장 |
| 조승필 | 2005.8~2008.2 | 서울MBC | 경영 | 광고국장 |
| 이채원 | 2008.3~2010.2 | 서울MBC | 경영 | 감사실장 |
| 임무혁 | 2010.3~2014.2 | 서울MBC | 경영 | 재무운영국장 |
| 안우정 | 2014.3~ | 서울MBC | PD | 서울MBC 부사장 |

삼척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
| 이양길 | 1994.3~1999.2 | 서울MBC | 기자 |
| 김동진 | 1999.3~2001.2 | 서울MBC | 기자 |
| 고영일 | 2001.3~2004.2 | 서울MBC | 경영 |
| 양영철 | 2004.3~2005.2 | 서울MBC | 기자 |
| 구영희 | 2005.3~2008.2 | 서울MBC | 기자 |
| 신용진 | 2008.3~2010.2 | 서울MBC | 기자 |
| 문장환 | 2010.3~2011.2 | 서울MBC | 기술 |
| 임무혁 | 2011.3~2014.2 | 서울MBC | 경영 |
| 안우정 | 2014.3~ | 서울MBC | PD |

춘천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
| 이영익 | 1993.3~1996.2 | 서울MBC | 기자 |
| 유수열 | 1996.3~1998.2 | 서울MBC | PD |
| 심상수 | 1998.3~2001.2 | 서울MBC | PD |
| 김용철 | 2001.3~2003.2 | 서울MBC | 기자 |
| 김승수 | 2003.3~2003.7 | 서울MBC | PD |
| 홍기룡 | 2003.8~2005.2 | 서울MBC | 기자 |
| 한병우 | 2005.3~2008.2 | 서울MBC | 기자 |
| 정홍보 | 2008.3~2011.2 | 서울MBC | 기자 |
| 김재형 | 2011.3~2014.2 | 서울MBC | 경영 |
| 이우용 | 2014.3~ | 서울MBC | PD |

원주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노영일 | 1994.3~1997.3 | 서울MBC | 기자 | 미주지사장 |
| 하광언 | 1997.3~2000.2 | 서울MBC | 기자 | 보도이사 |
| 윤호찬 | 2000.3~2003.2 | 서울MBC | 기자 | 충주MBC사장 |
| 이기호 | 2003.3~2006.2 | 서울MBC | PD | 라디오본부장 |
| 김윤영 | 2006.3~2009.2 | 서울MBC | PD | 미주지사장 |
| 김정수 | 2009.3~2010.2 | 서울MBC | PD | 라디오본부장 |
| 한귀현 | 2010.3~2012.2 | 서울MBC | 경영 | 본사감사 |
| 고민철 | 2012.3~2015.2 | 서울MBC | 경영 | 경영본부장 |
| 김철진 | 2015.3~ | 서울MBC | PD | 편성본부장 |

〈총칭〉

| | 서울MBC 보유주식 | 기타 |
|-------|------------|-------------------------------|
| 대전MBC | 51% | 계룡건설 40%, 오성철강 9% |
| 청주MBC | 88.2% | 개인 2명 11.8% |
| 충주MBC | 51% | 최동호 32.3%, 밸류라인(투자전문회사) 16.7% |

대전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
| 이종민 | 1993.3~1996.3 | 서울MBC | 경영 |
| 고성광 | 1996.3~1999.3 | 서울MBC | 기자 |
| 하영석 | 1999.3~2002.2 | 서울MBC | 기자 |
| 김상기 | 2002.3~2005.3 | 서울MBC | 기자 |
| 배귀섭 | 2005.3~2008.3 | 서울MBC | 기자 |
| 유기철 | 2008.3~2010.3 | 서울MBC | 기자 |
| 고대석 | 2010.3~2012.3 | 서울MBC | 기자 |
| 김종국 | 2012.4~2013.5 | 서울MBC | 기자 |
| 김창욱 | 2013.6~2015.3 | 서울MBC | 아나운서 |
| 이진숙 | 2015.3~ | 서울MBC | 기자 |

청주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
| 이상욱 | 1994.3~1997.2 | 서울MBC | 기자 |
| 편일평 | 1997.3~1999.2 | 서울MBC | PD |
| 박우정 | 1999.3~2002.2 | 서울MBC | 기자 |
| 지석원 | 2002.3~2003.2 | 서울MBC | PD |
| 고창근 | 2003.3~2005.2 | 서울MBC | 아나 |
| 정재순 | 2005.3~2008.2 | 서울MBC | 기술 |
| 김재철 | 2008.3~2010.2 | 서울MBC | 기자 |
| 윤정식 | 2010.3~2013.2 | 서울MBC | 기자 |
| 이용석 | 2013.3~ | 서울MBC | PD |

충주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
| 이연현 | 1995.2~1997.3 | 서울MBC | PD |
| 신대근 | 1997.3~1999.2 | 서울MBC | 기자 |
| 윤호찬 | 1999.3~2000.2 | 서울MBC | 기자 |
| 조정구 | 2000.3~2003.2 | 서울MBC | 기술 |
| 이경렬 | 2003.3~2005.2 | 서울MBC | 기술 |
| 이재은 | 2005.3~2008.2 | 서울MBC | 카메라기자 |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
| 정수열 | 2008.3~2010.2 | 서울MBC | PD |
| 배대윤 | 2010.3~2011.2 | 서울MBC | 기자 |
| 윤정식 | 2011.3~2013.5 | 서울MBC | 기자 |
| 이용석 | 2013.6~ | 서울MBC | PD |

〈영남〉

| | 서울MBC 보유주식 | 기타 |
|-------|--|--|
| 대구MBC | 51% | 쌍용일가 29.87%(쌍용 김석원 회장 아들 김지용 22.37%, 김석원 7.5%), (주)화성관리공사 10.80%, (주)GS글로벌 8.33% |
| 안동MBC | 98.96% | 개인 2명 1.04% |
| 포항MBC | 95.86% | 개인 4명 4.14% |
| 부산MBC | 72.27% | 한국주철관 18.49%, 범LG계열(구본성, 구미현, 구명진, 구지은, (주)아워홈) 9.24% |
| 울산MBC | 100% | |
| MBC경남 | 2011년 통합 결정 뒤 출범 (서울MBC 90.10%, 학교법인 한마학원 2.51%, 이혁 1.18%, 자사주 6.21%) | |

대구MBC

| 이름 | 재직 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이명석 | 1993.3~1995.2 | 서울MBC | 경영 | 기획이사 |
| 김민식 | 1995.2~1998.3 | 서울MBC | 경영 | MBC애드컴 사장 |
| 유흥렬 | 1998.3~1999.3 | 서울MBC | PD | 전무이사 |
| 신대근 | 1999.3~2002.2 | 서울MBC | 기자 | 총주MBC사장 |
| 이공희 | 2002.3~2003.2 | 서울MBC | PD | 편성본부장 |
| 김종오 | 2003.3~2005.2 | 서울MBC | 기자 | 보도본부장 |
| 박노홍 | 2005.3~2008.2 | 서울MBC | 기자 | 뉴스편집2부장 |
| 김동철 | 2008.3~2010.2 | 대구MBC | PD | 대구MBC 경영국장 |
| 박영석 | 2010.3~2012.4 | 대구MBC | 기자 | 대구MBC 보도국장 |
| 차경호 | 2012.5~2013.11 | 서울MBC | 기자 | 기획조정본부장 |
| 김환열 | 2014.3~ | 대구MBC | 기자 | 대구MBC 보도국장 |

안동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류제국 | 1993.2~1996.2 | 서울MBC | PD | 라디오국장 |
| 곽노우 | 1996.3~1999.2 | 서울MBC | 기술 | TV기술국장 |
| 이원호 | 1999.3~2000.5 | 서울MBC | 경영 | 미디어텍부사장 |
| 윤중보 | 2000.6~2003.2 | 서울MBC | 기자 | 해설위원 |
| 강철용 | 2003.3~2005.2 | 서울MBC | PD | 월드컵방송기획단 |
| 이상근 | 2005.3~2008.2 | 서울MBC | 기술 | 방송인프라국장 |
| 전우성 | 2008.3~2010.2 | 서울MBC | 기술 | 기술연구소장 |
| 이윤철 | 2010.3~2013.6 | 서울MBC | 아나운서 | 아나운서국장 |
| 김상철 | 2013.6~ | 서울MBC | 기자 | 논설위원실장 |

포항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박영일 | 1993.3~1996.2 | 서울MBC | 경영 | 기획실장 |
| 김진호 | 1996.3~1999.2 | 서울MBC | 기자 | 해설위원 |
| 박근학 | 1999.3~2000.2 | 서울MBC | 경영 | 총무국장 |
| 김일수 | 2000.3~2003.2 | 서울MBC | PD | 편성실장(이사) |
| 김승한 | 2003.3~2005.2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 위원 |
| 정기평 | 2005.3~2008.2 | 서울MBC | 기자 | 디지털본부장 |
| 조학동 | 2008.3~2009.2 | 서울MBC | 기술 | 제작기술국장 |
| 남정채 | 2009.3~2010.2 | 서울MBC | 경영 | 신사옥추진본부장 |
| 강성주 | 2010.3~2013.6 | 서울MBC | 보도 | 보도국장 |
| 이우철 | 2013.6~ | 서울MBC | 기술 | 디지털본부장(이사) |

부산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이우현 | 1994.3~1996.9 | 부산MBC | 기자 | 보도국장 |
| 유삼렬 | 1996.9~2001.2 | 부산MBC | 기술 | 기술국장 |
| 김영 | 2001.3~2005.2 | 부산MBC | 기자 | 보도국장 |
| 강종묵 | 2005.3~2008.2 | 부산MBC | 기자 | 보도국장 |
| 전용성 | 2008.3~2010.2 | 부산MBC | 기자 | 보도국장 |
| 김수병 | 2010.3~2014.2 | 부산MBC | 기자 | 보도국장 |
| 문철호 | 2014.3~ | 서울MBC | 기자 | MBC북경지사장 |

울산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심규성 | 1992,2~1995,2 | 서울MBC | 경영 | 경영관리실장 |
| 민영기 | 1995,2~1998,3 | 서울MBC | 경영 | 진주MBC 사장 |
| 김규수 | 1998,3~2000,2 | 서울MBC | 기술 | 기술이사 |
| 김정명 | 2000,3~2003,2 | 서울MBC | 기자 | 총무국장 |
| 신종인 | 2003,3~2005,2 | 서울MBC | PD | 부사장 |
| 김재철 | 2005,3~2008,2 | 서울MBC | 기자 | 보도제작국장 |
| 이완기 | 2008,3~2009,2 | 서울MBC | 기술 | 기술이사 |
| 황희만 | 2009,3~2010,2 | 서울MBC | 기자 | 논설위원 |
| 소원영 | 2010,3~2013,5 | 서울MBC | PD | 드라마국 부국장 |
| 윤길용 | 2013,6~ | 서울MBC | PD | 편성국장 |

MBC경남(마산)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강영구 | 1996,3~1998,2 | 서울MBC | 기자 | 동경지사장 |
| 김수량 | 1998,3~2001,2 | 서울MBC | 기술 | 기술본부장 |
| 윤건호 | 2001,3~2004,2 | 서울MBC | PD | 플러스미디어사장 |
| 김상균 | 2004,3~2005,7 | 서울MBC | 기자 | 정책기획실장 |
| 박진해 | 2005,8~2008,2 | 마산MBC | 경영 | 노조위원장 |
| 박노홍 | 2008,3~2010,2 | 서울MBC | 기자 | 대구MBC 사장 |
| 김종국 | 2010,3~2012,3 | 서울MBC | 기자 | 기획조정실장 |
| 정경수 | 2012,4~2013,6 | 서울MBC | 기자 | 글로벌사업본부장 |
| 황용구 | 2013,6~ | 서울MBC | 기자 | 논설위원 |

MBC경남(진주)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김중석 | 1993,2~1996,3 | 서울MBC | 기자 | 감사실장 |
| 김철순 | 1996,3~1998,3 | 서울MBC | 경영 | 광고 |
| 민영기 | 1998,3~1999,3 | 서울MBC | 경영 | 경영국장 |
| 정국록 | 1999,3~2002,2 | 서울MBC | 기자 | 보도부국장 |
| 윤재희 | 2002,2~2005,3 | 서울MBC | 기술 | 전산실장 |
| 김영철 | 2005,3~2008,3 | 서울MBC | PD | 홍보심의실장 |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정일윤 | 2008.3~2010.3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 김종국 | 2010.3~2012.2 | 서울MBC | 기자 | 기획실장 |
| 정경수 | 2012.4~2013.6 | 서울MBC | 기자 | 비서실장 |
| 황용구 | 2013.6~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호남〉

| | 서울MBC 보유주식 | 기타 |
|-------|------------|--|
| 광주MBC | 100% | |
| 목포MBC | 51% | 권이담 현 목포홍일고등학교 이사장(전 목포시장) 49% |
| 여수MBC | 51% | 동원산업 29%, 화천기계 10%, 선진사료 8.75%, 도원팜스 1.25% |
| 전주MBC | 83.86% | 주식회사 대상 15.2%, 유성근 0.94% |

광주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김포천 | 1989.2~1995.2 | 서울MBC | PD | 제작국장 |
| 노성대 | 1995.3~1999.2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 부국장 |
| 박진홍 | 1999.3~2003.2 | 서울MBC | PD | 편성실장 |
| 김택곤 | 2003.3~2005.2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 김상균 | 2005.3~2008.2 | 서울MBC | 기자 | 기획실장 |
| 윤영관 | 2008.3~2010.2 | 서울MBC | PD | 편성제작본부장 |
| 정태성 | 2010.3~2011.2 | 서울MBC | 기자 | 선거기획단장 |
| 서경주 | 2011.3~2014.3 | 서울MBC | PD | 라디오본부장 |
| 최영준 | 2014.3~ | 광주 MBC | PD, 기자 | 광주MBC 보도국장 |

목포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임동훈 | 1993.3~1996.2 | 서울MBC | 기자 | 스포츠국장 |
| 장용 | 1996.3~1999.2 | 서울MBC | 기술 | 영상미술국장 |
| 민창환 | 1999.3~2000.2 | 서울MBC | PD | 애드컴 전무 |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고진 | 2000,3~2001,2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 민창환 | 2001,3~2002,2 | 서울MBC | PD | 서울MBC 전무 |
| 김강정 | 2002,3~2005,2 | 서울MBC | 기자 | 정책이사 |
| 김세영 | 2005,3~2008,2 | 서울MBC | PD | 편성본부장 |
| 유창영 | 2008,3~2011,2 | 서울MBC | PD | 홍보국장 |
| 김성수 | 2011,3~2014,2 | 서울MBC | PD | 편성본부장 |
| 이장석 | 2014,3~ | 서울MBC | 기자 | 경영본부장 |

여수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정병수 | 1998,3~2001,2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 박진홍 | 2001,3~2002,2 | 서울MBC | PD | 편성국장 |
| 심우승 | 2002,3~2005,2 | 서울MBC | PD | 편성국장 |
| 김상기 | 2005,3~2008,2 | 서울MBC | 기자 | 보도위원 |
| 서정훈 | 2008,3~2010,2 | 서울MBC | 기자 | 보도위원 |
| 송원근 | 2010,3~2013,2 | 서울MBC | 경영 | 경영국 부장 |
| 윤영욱 | 2013,3~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전주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비고 |
|-----|---------------|-------|----|------------|
| 이대우 | 1995,2~1998,3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 장영배 | 1998,3~2001,2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장 |
| 유희근 | 2001,3~2004,3 | 서울MBC | 기자 | 홍보국장 |
| 박병선 | 2004,3~2005,2 | 서울MBC | PD | 라디오국장 |
| 한귀현 | 2005,3~2008,2 | 서울MBC | 경영 | 경영이사 |
| 장태연 | 2008,3~2010,2 | 서울MBC | PD | 예능본부장 |
| 선동규 | 2010,3~2012,2 | 서울MBC | 기자 | 보도국부장 |
| 전성진 | 2012,3~2015,2 | 전주MBC | PD | 전주MBC 편성국장 |
| 원만식 | 2015,3~ | 서울MBC | PD | 예능본부장 |

〈제주〉

| | 서울MBC 보유주식 | 기타 |
|-------|------------|------------------------|
| 제주MBC | 53.05% | 남창기업 46.87%, 박재규 0.08% |

제주MBC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사 | 직종 |
|-----|---------------|-------|------|
| 차인태 | 1995.3~1998.2 | 서울MBC | 아나운서 |
| 한영희 | 1998.3~2001.2 | 서울MBC | 경영 |
| 추성춘 | 2001.3~2003.2 | 서울MBC | 기자 |
| 은희현 | 2003.3~2005.2 | 서울MBC | PD |
| 우종범 | 2005.3~2008.2 | 서울MBC | PD |
| 조승필 | 2008.3~2009.2 | 서울MBC | 경영 |
| 정준 | 2009.3~2012.2 | 서울MBC | 경영 |
| 최진용 | 2012.3~2015.2 | 서울MBC | 기자 |
| 김창욱 | 2015.3~ | 서울MBC | 아나운서 |

부록 II

지역민방별 역대 사장의 전직과 대주주 (사별 출범~2015년 9월)

KNN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김경동 | 1994.9~1998.9 | KBS 제작본부장 | 한창(김종석) 1994~2002 |
| 2대 | 김성조 | 1998.10~2004.3 | 부산MBC | |
| 3대 | 박용길 | 2004.3~2007.3 | 부산MBC/자사 | 넥센(강병중) 2002~ |
| 4대 | 이만수 | 2007.3~2014.3 | 부산MBC/자사 | |
| 5대 | 김석환 | 2014.3~2015.3 | 부산MBC/자사 | |
| 6대 | 문혁주 | 2015.3~ | 포항MBC/자사 | |

TBC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변태석 | 1994.8~1995.10 | 대구MBC 사장 | 청구(장수홍) 1994.9~2003.12 |
| 2대 | 배학철 | 1995.11~1997.2 | KBS 보도본부장 | |
| 3대 | 박준영 | 1997.2~1998.3 | KBS 영상사업단 사장 | |
| 4대 | 이길영 | 1998.3~2006.3 | KBS 보도본부장 | 귀뚜라미 보일러(최진민) 2003.12~ |
| 5대 | 이노수 | 2006.3~2012.3 | KBS/자사 | |
| 6대 | 김정길 | 2013.3~ | 대구매일신문 부사장 | |

대전방송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임성기 | 1994~1997 | MBC 편성국장 | 우성사료(정인범) 1994~1998 |
| 2대 | 김광수 | 1997~2001 | SBS | 우성사료(정인호) 1998~2004 |
| 3대 | 이종기 | 2001~2009 | 대전MBC | |
| 4대 | 이갑우 | 2009~2012 | SBS | 우성사료(정보연) 2004~ |
| 5대 | 이왕돈 | 2012~2015 | SBS 논설실장 | |
| 6대 | 강선모 | 2015~ | SBS A&T 사장 | |

광주방송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이병춘 | 1994.9~1998.1 | MBC | 대주건설(허재호) 1994.9~1996.12 |
| | | | | 송촌건설(이연택) 1997.1~1998.1 송촌건설(양희천) 1998.2~2001.9 |
| 2대 | 박흥석 | 2001.9~2011.11 | 력키산업 | 력키산업(박흥석) 2001.9~2011.11 |
| 3대 | 정일윤 | 2011.11~2013.12 | MBC 보도국장 | 호반건설(김상열) 2011.11~ |
| 4대 | 양철훈 | 2014.1~ | SBS | |

울산방송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김우철 | 1996.12~1998.3 | KBS | 주리원백화점(이석호) 1996.12~1998.3 |
| 2대 | 차용규 | 1998.4~2005.11 | KNN 이사 | 주리원백화점(김석년) 1998.3~2000.3 현대백화점(이규환, 김남중) 2000.4~2002.5 금강고려화학(고주석) 2002.5~2005.3 |
| 3대 | 김용채 | 2005.11~2006.12 | 한국프랜지공업 대표 | 한국프랜지공업(김윤수) 2005.3~ |
| 4대 | 김종걸 | 2007.3~2011.3 | 울산MBC/자사 | |
| 5대 | 이상용 | 2011.3~ | 울산MBC/자사 | |

청주방송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이건영 | 1996~1998 | 충주MBC | 태일정밀(정강환) 1996.12~1997.10 |
| 2대 | 박재규 | 2004~2007 | 청주KBS/자사 | 두진(이두영) 1997.10~ |
| 3대 | 이궁 | 2011~2014 | SBS 논설실장 | |
| 4대 | 이한목 | 2014~ | 자사 | |

전주방송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백낙천 | 1997.3~2005.3 | SBS 보도국 부국장 | 세풍(고병욱) 1997.3~1998 |
| | | | | 일진전기(허정석) 1998~2000 |
| 2대 | 김택곤 | 2005.4~2011.3 | MBC | 일진홀딩스(허정석) 2000~ |
| 3대 | 신효균 | 2011.3~ | 전주MBC/자사 | |

강원민방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박기병 | 2001.4~2006.3 | 춘천MBC 사장 | 대양(정세환) 2001.4~ |
| 2대 | 박용수 | 2006.3~2011.3 | 강원대 총장 | |
| 3대 | 김영철 | 2011.3~ | 진주MBC 사장 | |

제주방송

| | 사장 | 재임기간 | 전직 | 대주주 |
|----|---------------|----------------|---------|-----------------------------|
| 1대 | 오헌봉 | 2001.12~2006.3 | 유성건설 회장 | 유성건설(오헌봉) 2001.12~2006.3 |
| 2대 | 김양수 (직무대행) | 2006.3~2011.2 | 제주KBS | 한주홀딩스(신영균) 2006.3~ |
| 3대 | 김양수 | 2011.3~ | | |

How Does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Work?

Focusing on Governance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CEO and Its Improvement

Jae-Yo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ung-Su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ance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CEO is a key factor in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To evaluate the tendencies, it collects and analyzes the profile of CEOs, directors, and shareholders of the 17 regional affiliates of MBC and 9 local commercial broadcasting companies between the early and mid-1990s and 2015. It also discusses the local broadcasting personnel and its operations. By doing so, the study attempts to reveal how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works. It finds out that the governance of regional broadcasters of MBC is controlled by the head office located in Seoul. At the same time, the governance of local commercial broadcasters is encroached by the tyrannical practices of major shareholders caused by 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These kinds of abnormal management of governance tend to constrain the investment on personnel and produ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desirable directions of governance focusing on the appointment of CEO in terms of both legislative system and self-regulation. They include establishing a new proviso for programming protocols in local broadcasting, introducing a CEO & non-executive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and so forth.

KEYWORDS Local Broadcasting CEO, Governance, Internal Colonialism, CEO Nomination Committee, CEO & Non-Executive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